

#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0
----------	-----

발의년월일 : 1998. 9. 5.  
 발 의 자 : 노영호 의원  
 외 6인

## 1. 제안이유

- '98. 8.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 안산시 지방행정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편되는 안산시 행정조직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정비 코자 함.

## 2. 주요골자

-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중 제1호 “의회·총무위원회”를 “의회·행정위원회”로 제2호 “보사·환경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하며 (안제2조)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중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을 다음과 같이 함. (안 제3조)

## 1. 의회 · 행정위원회

- 가.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산도서관, 대부출장소, 동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경제 · 사회위원회

-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도시 · 건설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참고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15, 875호)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의회 · 총무위원회”를 “의회 · 행정위원회”로 제2호 “보사 · 환경위원회”를 “경제 · 사회위원회”로 한다.

##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의회 · 행정위원회

- 가.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산도서관, 대부출장소, 동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경제 · 사회위원회

-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도시 · 건설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의회·총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의회·행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 ..... .....
1. <u>의회 · 총무위원회</u> 7명 2. <u>보사 · 환경위원회</u> 7명 3. <u>도시 · 건설위원회</u> 7명	1. <u>의회 · 행정위원회</u> ... 2. <u>경제 · 사회위원회</u> ... 3. ....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의회 · 총무위원회</u>  가.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 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에 속하는 사항 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산도서관, 대부출장소, 동사무소 소관에 속하 는 사항	1. <u>의회 · 행정위원회</u>  가..... < 삭      제 >  나. <u>기획실, 행정지원국</u> ..... ..... 다..... ..... .....

현 행	개 정 안
2. 보사·환경위원회	2. 경제·사회위원회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노동복지회관,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 ... 나.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사업소 ..... ..... .....
3. 도시·건설위원회	3. .... 가. 도시국 ..... ... 나.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삼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의회·총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의회·행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